미래대응기금 재원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초 선공제 반대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71

제안연월일 : 2026년 11월 6일

제 안 자 : 원주영,김진희,김동훈,이진환,임영신,
이영환,김영실,백선아,박경원,한근수,
손정자,전혜연,최문광,홍성우,최정혜,
김수연,김기준,김희성,유수형,김도은,정미정

1. 주문

남양주시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선공제하여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정부의 산정방식 변경안에 반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자율재원인 보통교부세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산정방식을 유지하고, 기금 재원은 별도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아울러 보통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일반재원 보전과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등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정부는 2027년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먼저 공제한 후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보통교부세는 약 29조 6천억 원, 남양주시는 약 1,19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나.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수요 충족과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한 핵심적인 법정 자율재원으로, 산정기초를 축소하는 것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재원 기준의 실질적인 축소이자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임.

다.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통한 목적사업 중심의 재원 배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국가 정책사업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할 우려가 있음.

라. 이에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초 선공제 방안을 철회하고, 기금 재원의 별도 마련과 보통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일반재원 보전, 지방정부의 참여 확대 등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재정분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3. 결의안 : 덧붙임

4. 이송처 :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과,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초 선공제 반대 촉구 결의문

정부는 2027년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방식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산정하는 것이나, 변경안은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남양주시 검토자료에 따르면 2027년 미래대응기금은 약 162조 원 규모로 예상되며, 변경안 적용 시 전국 보통교부세 재원은 약 98.1조 원에서 68.5조 원으로 약 29.6조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다. 남양주시 역시 보통교부세가 현행 방식 기준 약 3,945억 원에서 변경안 기준 약 2,754억 원으로 약 1,19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계정을 통해 지방에 재원을 배분하겠다는 입장이나, 특정 목적과 사업에 한정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를 대체할 수 없다.

남양주시의회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위기 대응이라는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를 존중한다. 그러나 국가 정책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의 법정 자율재원인 보통교부세 산정기초를 축소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반대한다.

첫째, 지방교부세법이 정한 법정 재원 기준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다.「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지방교부세 재원을 내국세 총액

의 1만분의 1,924로 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2항 제1호는 보통교부세를 해당 재원의 97%로 규정하고 있다.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먼저 공제하면 법정률을 유지하더라도 실질적인 교부세 재원은 감소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행정수요와 재정력 격차 보완 기능을 약화시킨다.

둘째, 국가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이다.「지방자치법」 제137조 제2항은 국가가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고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전략사업의 재원을 지방의 보통교부세에서 마련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지방재정의 계획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원배분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된다. 핵심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가 급격히 감소하면 계속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주민 생활행정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넷째, 재정분권에 역행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지방의 자율재원을 축소하고 중앙정부가 정한 목적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자율성이 약화된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첨단산업 투자뿐 아니라 주거·교통·교육·복지 등 주민 생활 기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재정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에 남양주시의회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주민 생활행정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보통교부세 산정기초인 내국세에서 먼저 공제하는 산정방식 변경안을 철회하고,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유지하라.

하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보통교부세 산정 이후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하여 지방의 법정 자율재원을 국가 정책재원으로 전용하지 말라.

하나.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영향 추계와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정부와 충분히 협의하라.

하나. 정부는 기금 도입이 불가피하더라도 보통교부세 감소분을 공모사업이 아닌 일반재원 방식으로 보전하고, 충분한 유예기간과 단계적 시행 등 실효성 있는 재정 완충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기획·운용·배분·사업선정 과정에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계정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계·집행할 수 있는 자율재원 또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운영하라.

하나. 국회는 미래대응기금 관련 입법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자주성 보장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

2026년 11월 6일

남 양 주 시 의 회